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182
------	------

제출일자 : 2022. 3. 17.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2021. 1. 12.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선인의 권한과 예우 (안 제3조 및 제4조)

- 1) (권한) 당선인은 구청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짐
- 2) (예우) 당선인에게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나.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안 제5조부터 제10조)

- 1) (존속기간)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함
- 2) (구성)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
- 3) (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
- 4)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다. 구 직원의 파견 및 예산·활동 등 지원 (안 제11조 및 제13조)

- 1) (사무직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직원 파견 요청
- 2) (예산 등 지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지원
- 3) (고려사항) 지원, 협조, 파견에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 고려
- 4) (수당 등)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지급

라. 위원회 준수사항 등 (안 제14조부터 제17조)

- 1) (준수사항)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금지
- 2) (활동보고서)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 활동보고서 작성 및 공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5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기관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2) 입법예고(2022. 2. 22. ~ 2022. 3. 14.) 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도첨부
- 4) 규제사전심사 :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여성가족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구청장의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예우) 당선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당선인에 대한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에 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제5조(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인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6조(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구청장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위원회 활동보고서 작성 및 보고
5.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 구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수사항)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구청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별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활동보고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활동보고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인수위원회 환경정비 : 22,000천원
- 회의 수당 : 10,500천원 (70,000원×15명×10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경비가 연평균 1억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예산과 조성익
연 락 처	2627 - 1072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인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인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 20명 이내
 2. 시·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 ⑥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직선거법】

- 제14조(임기개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에 실시하는 선거와 제30조(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시의 選舉 등)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새로 선거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당선일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삭제

③ 제187조제4항 및 제18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